

#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상훈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683
----------	-------

발의연월일 : 2025. 12. 29.  
발의자 : 김상훈 · 고동진 · 이현승  
진종오 · 최보윤 · 윤한홍  
이달희 · 김소희 · 김선교  
권영진 · 안철수 · 우재준  
강명구 의원(13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시가스사업자가 배관의 안전관리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설치 후 장기간 사용된 가스배관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교체 근거는 미흡한 실정임.

특히 국내에는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도시가스 배관이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으며, 정부는 2026년까지 도시가스에 수소를 20%까지 혼입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수소 혼입 시 발생할 수 있는 수소취성(배관 균열 · 파괴 현상) 등 새로운 위험이 제기되고 있어,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요구됨.

이에 장기사용 도시가스배관의 정의를 신설하고, 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의무화하며, 교체 · 보수에 관한 사업자 의무와 정부의 감독 ·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노후 배관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수소

혼입 시대에 대응하는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6 신설 등).

##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가스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장기사용 도시가스배관”이란 설치를 완료한 날부터 20년 이상 경과한 가스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부 부식·수소취성 또는 파괴 우려가 있는 배관을 말한다.

제3장에 제17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6(장기사용 도시가스배관의 관리 등) ① 도시가스사업자는 제17조 및 제17조의2에 따른 검사·진단과는 별도로 장기사용 도시가스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점검 및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교체·보수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안전조치가 적절히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교체·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장기 사용 도시가스배관 중 수소 혼입 계획이 있는 배관이나 수소취성

우려가 큰 재질의 배관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장기사용 도시가스배관의 기준, 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기준과 방법, 교체·보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7조의3에 따른 안전관리수준평가를 받은 경우에도 제2항에 따른 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의무를 갈음할 수 없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10. (생 략)</p> <p><u>&lt;신 설&gt;</u></p>	<p>제2조(정의) -----.</p> <p>1. ~ 10. (현행과 같음)</p> <p>11. “<u>장기사용 도시가스배관</u>”이란 설치를 완료한 날부터 20년 이상 경과한 가스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부 부식·수소취성 또는 파괴 우려가 있는 배관을 말한다.</p>
<p><u>&lt;신 설&gt;</u></p>	<p>제17조의6(장기사용 도시가스배관의 관리 등) ① 도시가스사업자는 제17조 및 제17조의2에 따른 검사·진단과는 별도로 장기사용 도시가스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교체·보수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②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안전조치가 적절히 이행되지 아니한</p>

경우에는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교체·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장기사용 도시가스 배관 중 수소 혼입 계획이 있는 배관이나 수소취성 우려가 큰 재질의 배관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장기사용 도시가스배관의 기준, 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기준과 방법, 교체·보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7조의3에 따른 안전관리 수준평가를 받은 경우에도 제2항에 따른 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의무를 갈음할 수 없다.